

무배당 (에이스)헬스플러스의료보장보험 상품요약서

1. 보험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1) 상품의 특이사항

- ① 예정이율 : 3.5%(연복리)
- ②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납입주기
10년	전기납	월납, 연납

- ③ 만기환급금 :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 없습니다.
- ④ 보험료할인 혜택 : 피보험자 추가시 보험료 5% 할인(추가 피보험자에 한함)

2) 가입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① 가입대상: 15세 ~ 55세(보험연령기준)
- ②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 사항으로 인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보험금지급사유 및 지급내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내역

<기본 계약>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입원의료비 (1,000만원)	책임개시일 이후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치료실비(발병일부터 365일 한도)	1.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료 식대등 2.입원재비용 : 검사료, 주사료, 지정진료비 등 3.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 재료비등 4.병실료차액 : 실제(2인실기준)와 기준병실과의 차액 ※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이 부담하는 1~3.의 비용전액과 4.의 비용중 50% 해당액을 1,000만원 한도로 보상

주)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선택 계약>

○ 의료비보장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입원의료비 (1,000만원)	책임개시일 이후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치료실비(사고일부 365일 한도)	1.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료, 식대등 2.입원재비용 : 검사료, 주사료, 지정진료비 등 3.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등 4.병실료차액 : 실제(2인실기준)와 기준병실과의 차액 ※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이 부담하는 1~3.의 비용전액과 4.의 비용중 50% 해당액을 1,000만원 한도 로 보상

주)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 질병보장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자금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	고액치료비암: 5,000만원(3개월 면책) 일반암 : 2,000만원(3개월 면책)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 400만원 (1년 이내 50%지급)
뇌졸중진단자금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진단자금 각각 1회 지급	2,000만원 (1년 이내 50%지급)
급성심근경색증진단자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진단자금 각각 1회 지급	2,000만원 (1년 이내 50%지급)
특정질병입원일당	특정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	1일당 5만원(3일초과 1일당)

주) 1. 특정질병

- 여자 : 여성다발성질환으로 상피·양성신생물, 유방·골반·생식기의 장애, 골다공증, 관절염, 갑상샘, 신부전, 요로결석을 말함
- 남자 : 남성 7대질환으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 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을 말함

주) 2.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 상해보장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시	5,000만원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5,000만원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4,000만원 한도
신주말상해	사망보험금	주말에 상해로 사망시	5,000만원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주말에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5,000만원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주말에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4,000만원 한도
고도장해생활자금	고도장해생활자금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월 100만원 (120개월 확정지급)

주)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 기타보장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성형비용	자동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1사고당 1회)
교통사고처리비용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을 손괴시킴으로써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10만원
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액	1,000만원 한도
폭력피해위로금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폭행, 폭력, 강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한 의사의 진단에 한함)	100만원 (1사고당 1회)

주)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2)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① 책임개시전 사고

- 보험시기 및 종기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이외의 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에 시작하며 마지막날에 끝납니다.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제 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의 고의/ 마약, 약물운전/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등(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비교표

1) 담보별 보험료

(상해급수 1급, 단위 : 원)

구 분	남자(월납)				여자(월납)			
	20세	30세	40세	50세	20세	30세	40세	50세
질병입원의료비	3,590	5,700	11,630	23,690	3,590	5,700	11,630	23,690
상해입원의료비	2,350	2,350	2,350	2,350	2,350	2,350	2,350	2,350
암진단자금	1,090	2,890	8,870	26,370	1,660	4,710	9,370	15,210
뇌졸중진단자금	400	1,000	2,840	9,500	180	380	1,660	6,300
급성심근경색증진단자금	340	620	1,100	1,900	120	240	420	780
특정질병입원일당	1,300	2,500	4,850	9,100	1,250	1,800	2,050	2,150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7,050	7,050	7,050	7,050	7,050	7,050	7,050	7,050
신주말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3,750	3,750	3,750	3,750	3,750	3,750	3,750	3,750
고도장해생활자금	870	870	870	870	870	870	870	870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	70	70	70	70	70	70	70	70
교통사고처리비용	1,340	1,340	1,340	1,340	1,340	1,340	1,340	1,340
일상생활배상책임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폭력피해위로금	30	30	30	30	30	30	30	30

주)상기 담보별 가입금액은 『2.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내역』에 의한 지급금액입니다.

2) 가입플랜 보험료

(단위 : 원)

구 분	남자(월납)				여자(월납)			
	20세	30세	40세	50세	20세	30세	40세	50세
합계보험료	22,290	28,280	44,860	86,130	22,370	28,400	40,700	63,700

주) 가입플랜 보험료는 『1) 담보별 보험료』의 합입니다.

4. 보험료 산출기초

1)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① 위험보험료는 사고시 보험료를 지급하는 재원으로 사전에 확정된 예정위험율을 기초로 산출 합니다.
- ② 저축보험료는 만기 또는 해지시 환급금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회사에서 정한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만기 또는 해지시 지급합니다.
- ③ 부가보험료는 보험계약시 소요되는 각종비용과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예정이율

이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은 연복리 3.5%입니다.

※ 예정이율 : 회사는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해 계약자의 납입보험료를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을 일정한 이율로써 운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 운용이율을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3) 예정위험율

○ 질병입원의료비(1,000만원)

(40세 기준)

예정위험률(남)	예정위험률(여)
0.003519	0.003519

4) 예정사업비율

(10년만기 전기납/기본계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구 분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사업비계
예정사업비지수	100.0%	100.0%	100.0%	100.0%

※ 우리 회사에서는 귀하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중 일정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사업비율이라 합니다.

※ 예정사업비지수란 손해보험협회에서 매년 산출한 업계의 평균 사업비 규모(사업비 항목별 업계 평균을 100으로 설정)와 비교한 지수입니다.

이러한 예정사업비지수는 실제 귀하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금액, 보험기간, 납입보험료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자배당제도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배당이란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지급되는 배당금의 하나로서, 예정된 기초율과 실적의 차에 따라 발생된 이익을 가입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해약환급금 예시(기본계약) : 남 40세 기준

(단위 : 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질병입원의료비 (1,000만원)	0	28,671	69,739	102,906	126,704	139,432	139,210	114,090	68,770	0